

2) 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는 순회교사

- 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2개교 이상의 관내 또는 인근지역 학교를 순회하면서 소속기관장 또는 순회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

3) 순회교사는 소속학교 및 순회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의 학습지도 및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함

※ 단순히 수업시수를 조정하기 위한 순회교사는 임용하지 않도록 함

라. 임용

- 1) 순회교사제 운영은 국·공·사립학교간, 병설·통합학교간, 사립학교간, 타 시·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
- 2) 순회(겸임)교사는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 또는 8월 말일, 2학기는 2학기 개학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임용(발령)하고, 순회 기간 동안 겸임발령 처리(학교 일정 및 운영 계획에 맞게 겸임발령 처리)

마. 복무

- 1) 순회교사 복무관리는 NEIS 근무상황으로 일원화한다.
 - 소속학교와 순회학교의 복무로 구분하되, 모든 복무관리는 순회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소속학교 장의 책임 하에 관리
- 2) 순회학교에서의 복무는 순회학교장이 명하는 교과의 학습지도 및 평가를 담당(학습지도안의 작성, 수업준비, 지도교과 평가 업무 등)하거나 순회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
- 3) 소속학교장은 순회학교장과 협의하여 순회교사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무
- 4) 순회교사의 연가·출장·병가·특별휴가 등은 소속 학교의 장이 순회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조치하고, 지각·외출·조퇴 등은 순회학교의 장이 허가한 후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
- 5) 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는 순회교사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(이하 "순회교사"라 한다))에 대하여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 부여 가능(「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」 제2조 및 제8조제3항, 2023.1.20. 개정)

바. 농어촌 순회교원 수당 지급

- 1) 지급근거 : 「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」(교육부 훈령 제237호)
 - 2) 지급대상 : 임용권자로부터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어촌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
(병설학교 겸임교원, 통합운영학교 겸임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)
- ※ 농어촌학교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호 및 제4호의 해당 지역(2019.7.1.시행)